

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「경찰법」 개정 추구 건의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강 동 길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「경찰법」 개정 촉구 건의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자치경찰제도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, 지역특성에 적합한 주민 생활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의 종합행정력을 높이는 한편, 국가 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.
-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‘광역단위 자치경찰 전국 확대’를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으며,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 ‘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’를 설치하여 자치경찰제 도입방안(18.11.13)을 발표하였습니다.

또한 자치경찰제의 확대 도입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경찰 및 지방경찰의 조직과 소관업무를 명확히 하여 경찰권한의 분권화를 추진하고, 시행초기의 지방재정부담 증가, 치안력 약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「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」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.

- 본 건의안을 통하여 그동안 여러 정치적 사안에 따라 후순위로 배제되고, 이해관계 조직들의 첨예한 대립과 소모적인 이전투구 양상으로 인해 도입이 번번이 무산되어 온 「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」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